



【검토보고서】

2017. 12. 19.(화)
제 287 회 정례회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양주시의회
Yangju City Council

【전문위원 김영헌】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과

가. 제안자 : 양주시장(복지지원과장)

나. 제출일 : 2017년 11월 30일

2. 제안이유

-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사회참여활동 지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기능을 정함 (안 제3조)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을 정함 (안 제4조)

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한 근거를 정함 (안 제5조)

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수탁 운영 내용을 정함 (안 제6조 ~ 12조)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39,675천원

- 위탁운영비 및 인건비(39,675천원) : 201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예정

나.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17. 11. 8. ~ 2017. 11. 28.(20일간)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부서협의

1) 협의기간 : 2017. 11. 1. ~ 2017. 11. 6.(6일간)

2)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 요

1) 조례제정 목적

- 본 안건은 양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늘 어가는 장애인 관련 시설들에 대한 명확한 예산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 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의 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례 개요

- 본 조례안은 총 13개조항 부칙 2개조항, 1개의 별표로 구성되었으며,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및 위탁절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조례의 구성

구분	내용	관련법령	비고
제1조(목적)	조례제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조(정의)	조례용어의 정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58조	
제3조(명칭및기능)	조례적용 시설의 명칭과 기능		
제4조(이용대상)	조례적용 시설 이용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5조(이용료징수및면제)	시설의 이용료 및 면제대상 설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위탁자격 및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	
제7조(위원회의설치및기능)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8조(수탁자의의무)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제9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의 운영규정 수립 의무부여		
제10조(운영비지원)	시설의 예산지원 근거		
제11조(지도·감독)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제12조(위탁계약의해지)	위탁해지 기준		
제13조(준용)	관계법령 준용		
부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별표1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명칭,기능		

□ 조례안 주요 내용

1) 명칭 및 기능 등(안 제3조)

○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규정함.

▶ 조례안 별표1)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기능	비고
장애인복지관	1. 상담사업 : 건강관리, 직업알선, 직업, 결혼 등 2. 직업훈련사업 : 기능훈련, 직업훈련 등 3. 재활훈련사업 : 기능회복운동, 생활작업훈련,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4. 교육사업 : 점자, 수화, 컴퓨터 교육 등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 2. 보호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편의 제공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등 지역사회형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1. 장애인의 직장 출·퇴근 차량운행 보조 2. 민원업무 처리 및 외출, 나들이를 위한 지원 3.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업무지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1.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 중계통역 및 상담지도 서비스 2. 장애인의 문제해결 및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생활상담 서비스 제공 3. 수화교육 및 보급, 수화통역사·청각장애인통역사 양성 및 전문성 강화 사업 4. 청각·언어장애인의 각종 민원통역서비스,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장애인 보호작업장	1. 직업상담 및 지도 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을 위한 생산활동 3.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4. 그 밖에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	

▶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조례의 경우 명확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해

당시설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음. 현재 조례지원 시설중 일부 사업부지에 대한 도로명부여 등이 확정되지 않아 소재지를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사업확정후 소재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설치예정지(준공후 도로명 부여)

명 칭	규 모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예정(2018. 12. 준공) ○사업위치 : 양주시 삼승로 129번길 199-13(산84-1번지)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2,999.62㎡(지상2층)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예정(동부권:2018. 12 준공, 서부권:2018. 7. 공사완료) ○사업위치 : 동부권(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서부권(양주시 양주산성로 865-17) ○사업규모 : 동부권-면적 132㎡, 이용정원 10명, 서부권-건축연면적 127.8㎡, 이용정원 10명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위치 : 백석읍 고릉말로74번길 38(임차) ○종사자수 : 6명 ○일평균 이용인원 : 43명 ○운행차량 : 4대(승합차3대, 카니발 1대)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위치 : 덕정길 27, 2층(임차) ○종사자수 : 5명 ○연평균 이용인원 : 4,200명(수화 통역, 상담)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예정(2018. 12. 준공) ○사업위치 : 양주시 삼승로 129번길 199-13(산84-1번지)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518.1㎡(지상2층)

2) 이용료 징수 및 면제(안 제5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함.
- ▶ 「지방자치법」에서는 공공시설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본조례의 사용료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들의 경우 시설전체가 위탁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설치될 시설의 경우도 위탁계획을 갖고 있어, 조문에 대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내 용

제5조(이용료 징수 및 면제) 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1조(비용의 징수) ①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관리·운영의 위탁(안 제6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위탁자격, 절차 및 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위탁기간은 법령기준에 의거 5년으로 하였음.

※ 내 용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에 따른다.
- 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 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판단·통보하여야 한다.

4)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안 제7조)

- 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위원회는 당연직의원1명(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포함, 장애인 복지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수탁자 선정심의회가 완료되면 자동위촉이 해제되는 비상설기구로 규정함.

※ 내 용

-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거나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4. 그 밖의 법률 관련 전문가 등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위원은 위탁운영을 할 수탁자가 결정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5) 장애인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2조)

-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수탁자의 의무, 자체운영규정, 운영비의 예산지원근거,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대하여 예산지원 근거마련 및 위탁규정의 명확화 등 종합적인 관리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다만, 명확한 시설정의, 유사조례 폐지 등 본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개정의 필요성은 있음.

▶ **향후 개정의 필요성**

① **복지시설의 명확한 지정**

- 조례안 별표1에서는 양주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기능을 명시하였으나, 소재지 지정 등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지에 대하여 사업미준공에 따른 도로명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개정시 명칭 및 소재지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② **유사조례 폐지**

- 현행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15.11.9.)는 양주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한 조례로, 본조례안과 조례제정의 취지가 매우 유사하며 적용되는 대상역시 같은 시설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현행조례의 유지 실효성이 없어 추후 조례의 폐지가 필요함.